

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보험 신규가입(15대) 제안요청서

2024. 7

국 토 교 통 부
물 류 산 업 과

▣ 목 차 ▣

I . 과업개요 1

II . 제안 요청 내용 1

III . 참가자격 및 사업자선정 2

IV . 과업지시서 5

I. 과업 개요

- ☐ 공 고 명: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보험 신규가입(15대)
- ☐ 납품기한: 계약일부터 7일
- ☐ 보험기간: 2024. 7. 31. 24:00부터 2025. 7. 31. 24:00까지(계약일로부터 1년)
- ☐ 가입대상: 15대 * 보험가입 차량 세부내역 참조
- ☐ 구매목적
 -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인해 화물운송 마비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에 위탁하여 관리중인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중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구매(15대)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신규가입
- ☐ 계약방법: 조달 계약
- ☐ 기타사항: 공동계약 불가

II. 제안 요청 내용

- 보험 담보 및 금액

담 보		보 험 가 입 금 액	비고
대인배상 I (책임)	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	
대인배상 II (임의)		무한	
대물배상	합 계	(1사고당) 5억원	
	책임가입	(1사고당) 2천만원	
	임의가입	(1사고당) 4억8천만원	
자동차상해		(1인당) 사망·후유장애 2억원, 부상 1억원	
자기차량손해		차량가액 적용(부담금: 손해액의 20%, 최저20만원 / 최대50만원)	
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		(1인당) 5억원	
기타사항 (특약 등)		- 운전자 제한 없음 / 연령제한 없음 - 다수차량 특별요율 - 물적사고 할증기준: 200만원 - 관용 특약 - 신법률비용지원특약 [사망: 3천만원, 부상(1급~3급: 3천만원, 4급~7급: 500만원, 8급~14급: 100만원), 벌금 2천만원, 변호사 선임비 5백만원]	

Ⅲ.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

1. 입찰참가자격

가. 입찰참가 자격(①,②,③ 모두를 갖춘 자)
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

나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에 손해보험업(자동차보험 3828) 업종으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[단,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(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)에 한함]

다.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(자동차보험)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%이상인 업체(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가능)

라.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.[단,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]

마. 「보험업법」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

나. 기타사항

①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

② 본 입찰은 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」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③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시 제출된 입찰서에 한하여 무효 처리
- ④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
- ⑤ 다이렉트 보험사 입찰 제한

- (사유)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는 5개 지역(부산, 광주광역시, 부평, 포천, 수원)의 군부대에 배치되어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시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긴급물류를 수송하며 긴급수송 중 차량 파손, 운전자 부상 등에 따른 차량 및 운전자 보험처리, 구상금 청구 등을 보험사 직원이 대행하여야 함에 따라 다이렉트 보험사는 입찰을 제한함.

2. 사업자 선정

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$\pm 2\%$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.

나. 본 용역은 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 제5조제1항제6호 [별표6: 추정가격 5억원 미만]에 따라 심사하여 **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**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공개하며,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※ (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)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(<http://fisis.fss.or.kr>)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, 지급여력비율이 100%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.

다. 낙찰하한율은 **47.995%**입니다.

라.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마.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제출 및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[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전자문서]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으로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(계약예규)「적격심사기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.

바.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
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
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.(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적
격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
사.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
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차순
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3. 입찰의 무효
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9조 및 동
시행규칙 제44조와 「(계약예규)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에 해당하
는 입찰은 무효입니다.

나. 유의사항

- 1)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(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
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, 각자 대표도 해당)가 법인등기부등본상
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
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
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(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
는 해당일)이며 마감일(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)까
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
하시기 바랍니다.
- 3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 및
「(계약예규)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
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입찰대
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
등)을 요청하는 경우,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
하여야 합니다.

4. 불공정행위 금지

가.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(이하 이 조에서는 “입찰자 등”이라 한다)는 입찰·낙찰,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- 1) 금품·향응 등의 공여·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- 2)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
- 3)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- 4) 하수급인 또는 자재·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- 5)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

나.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·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·해제될 수 있고,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라.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“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기타사항

가.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

템(<http://www.g2b.go.kr>)서 확인 후,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.

- 나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(개인)상 대표자(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), 주소,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보마당)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라.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조달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, 통장사본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,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V. 과업지시서

- 가.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긴급한 사유로 계약업무가 지연될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.
- 다.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
- 라.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.
- 마.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변동되는 보험료를 납부 또는 환불하고 차량별로 변경 계약할 수 있다.

- 바. 차량 증차 등에 의하여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사. 신규계약 또는 차량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계약 후 차량등록 완료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정한다.
- 아. 대·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(차량 자동승계)로 가입하고, 보험가입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는다.
- 자. 보험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시 만료일 15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차.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. 이때(보험해지의 경우) 기존 보험계약사는 기존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- 카.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.
- 타.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한다.
- 파. 차량별로 각각 보험증서(영수증)를 발행한다.
- 하. 보험 시작일은 입찰 등 행정처리 기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보험기간은 시작일(계약일)로부터 1년으로 한다.